

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1. 25.
행정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: 2020. 11. 19.
- 제출자: 이창훈 의원
- 회부일자: 2020. 11. 20. 회부
- 상정일자: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(2020. 11. 25. 상정·심사·의결)

2. 제출설명의 요지

- 제출설명자: 이창훈 의원

- 제출이유

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-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적용범위 (안 제3조):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
- 다. 예우 및 홍보에 관한 규정 (안 제4조)
- 라. 우대 및 확인에 관한 규정 (안 제5조 ~ 제6조)
- 마.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규칙 (안 제7조 ~ 제8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지영)

○ 「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」은

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에 따라 3대 가족이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찾아 널리 선양하고 아울러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들이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

○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특이사항 없음

6. 소수의견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